

대구광역시 달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보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23
----------	------

발의연월일 : 2019. 9. 6.

발의의원 : 김보경 의원, 도일용 의원

1. 제안이유

-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달성군민의 선택 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나. 선택예방접종의 종류 및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다. 접종비용 지원 및 위탁의료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라. 위탁의료기관 비용상환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12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12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종종류 및 대상) 선택예방접종의 접종종류 및 접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타바이러스: 생후 8개월 미만 영아 (신청일 기준 보호자가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대상포진: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일 기준으로 달성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조(접종횟수) 선택예방접종의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타바이러스: 2회 내지 3회
2. 대상포진: 1회 단,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접종비용 지원)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사업의 예방접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탁의료기관 선정) 군수는 달성군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 업무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 예방접종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

여 전체 또는 일부 선택예방접종에 대하여 위탁 할 수 있다.

제6조(접종방법 등) ①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받고자 할 때에는 군에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과 보호자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지)소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한 다음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②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지)소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한 다음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③ 선택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선택예방접종한 사람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료기관 비용상환) ①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접종 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자에 대하여 보건소에 비용상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에서는 피접종자에 대하여 비용지급심사를 거쳐 상환결정을 한 후 비용을 상환한다.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무료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선택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부·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건강증진과 의료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 등을 확립·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발 의 자 서 명 부

의 원 명	서 명	날 인
김 보 경	김 보 경	
도 일 용	도 일 용	

